

대출신청에 관한 팩시밀리 신청 약정서

일자 : 년 월 일

(주)한국씨티은행

(인)

거래처 :

(인)

주소 :

여신한도거래(여신개별거래,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체결일자: 년 월 일

(주)한국씨티은행 (이하 "은행"이라고 함)과 상기 거래처 (이하 "거래처"라고 함)는 거래처가 은행과 체결한 상기 여신한도거래(여신개별거래, 지급보증거래)약정서에 따른 대출신청을 팩시밀리로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한다.

제 1조 팩시밀리 신청 (및 처리 방법)

(1) 거래처는 여신한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서를 팩시밀리 전송방식으로 은행에 제출할 수 있다. 이하 거래처가 본항에 의하여 팩시밀리 전송

(주)한국씨티은행

CRA-922 (2019.05.02)

심의번호: 1903-02-063(심의일 2019.3.25)

방식으로 행하는 신청을 팩시밀리 신청이라고 한다.

(2) 제 1항의 여신한도를 사용하기 위한 팩시밀리 신청은 거래처가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3) 은행은 대출신청서를 팩시밀리로 수령한 경우,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 따른 대출신청 거래를 취급한다. 은행은 팩시밀리로 수령한 대출신청서에 날인된 인영 또는 서명을 거래처가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는 경우에 대출신청 거래를 취급한다.

제 2조 면책 등

(1) 은행이 팩시밀리로 수령한 대출신청서에 날인된 인영 또는 서명을 거래처가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여신(일반자금대출, 외화대출, 무역금융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은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인장이나 서명의 도용,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거래처는 팩시밀리 신청에 따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해당 팩시밀리로 수령한 대출신청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한국씨티은행

CRA-922 (2019.05.02)

심의번호: 1903-02-063(심의일 2019.3.25)

제 3조 적용약관

은행과 거래처는 팩시밀리 신청에 따른 여신거래에 대해서는 이 약정서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타 해당 거래별 약관 또는 약정서가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 4조 국문본의 우선

본 약정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주)한국씨티은행

CRA-922 (2019.05.02)

심의번호: 1903-02-063(심의일 2019.3.25)